
한국4-H활동규범

한국4-H활동규범

2009년 3월 18일 제정

2016년 10월 10일 개정

2018년 5월 2일 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제정 및 목적) ① 이 규범은 사단법인 한국4-H본부 정관(이하 ‘정관’ 이라 한다)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며 4-H활동규범(이하 ‘규범’ 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② 이 규범은 한국4-H본부가 한국4-H활동주관단체로서 정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방침, 각종 단위 조직의 체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4-H운동의 목표) 정관 제2조 규정의 한국4-H본부(이하 ‘본부’ 라 한다)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4-H운동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.

1. 지·덕·노·체 4육(育) 일체의 4-H인 양성
2. 리더십과 공동체의식 고취
3. 농업·농촌, 자연·환경 친화적 품성과 기능의 배양
4. 유용한 생활기술의 체득
5. 농심의 함양

제3조 (기본원리) 전 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4-H운동의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.

1.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의 공헌
2. 4-H서약과 강령의 실천
3. 자원지도자의 헌신과 참여
4. 자연사랑과 농촌사랑의 실천
5. 4-H교육방법(자기주도학습 및 경험학습방법)에 입각한 교육

제4조 (4-H활동 참여 덕목) 4-H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덕목을 갖는다.

4-H청소년은 즐겁고

새로운 사람을 만나며
새로운 일들을 배우고 실행하며
유용한 생활기술을 습득하고
자신감을 쌓고
책임을 이행하며
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며
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습니다.

제5조 (서약) ① 4-H 서약은 다음과 같다.

4-H 서약

나는 4-H회와 사회와 우리나라를 위하여
나의 머리는 더욱 명석하게 생각하며
나의 마음은 더욱 크게 충성하며
나의 손은 더욱 위대하게 봉사하며

나의 건강은 더욱 좋은 생활을 하기로 맹세함

② 4-H서약은 다음에 의하여 행한다.

1. 4-H회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은 위의 서약을 하고 평소 이를 실천한다.
2. 지도자가 그 자격을 얻고 4-H운동에 동참할 때 위의 서약을 하고 평소 이를 실천수범한다.
3. 기타 4-H 교육행사 및 회의시 서약을 제창한다.

제6조 (강령) 4-H강령은 다음과 같다.

4-H 강령

1. 나는 4-H회 활동이 나에게 훌륭한 국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믿는다.
2. 나는 나의 머리를 연마하여 생각과 판단의 계획을 올바르게 할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을 믿는다.
3. 나는 나의 마음을 수양하여 진실하고 겸허하며 친절하게 살 수 있는 고상한 인격자가 될 것을 믿는다.
4. 나는 나의 손을 과학적으로 훈련하여 쓸모 있고 유능하며 도움이 되는 기능을 얻게 될 것을 믿는다.
5. 나는 나의 몸을 단련하여 질병을 물리치고 능률을 증진하며 생활을 즐기게 될 것을 믿는다.
6. 나는 나라와 사회를 발전케 하는 것을 내 임무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.

제7조 (금언) 4-H운동의 철학을 담은 금언은 다음과 같다.

1. ‘좋은 것을 더욱 좋게’ (To Make the Best Better)
2. ‘실천으로 배우자’ (Learning by doing)

제8조 (비종교의 원칙) 4-H는 어떠한 특정 종교단체에 단체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며 또한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.

제9조 (비정치적의 원칙) ① 4-H는 어떠한 특정 정치단체에도 관여하지 아니하며 또한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.

② 4-H의 조직을 어떠한 정치적 활동에도 이용할 수 없다. 단, 각 개인에 대하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4-H서약과 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단체나 결사 등에 가입하는 자유는 속박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 (비영리의 원칙) 4-H는 일체의 영리행위에 이용될 수 없다.

제11조 (국제협력 방침) 4-H는 세계 각국 4-H조직과의 상호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여 국위를 선양한다.

제12조 (대의 통신 및 발표) 4-H운동의 관계사항에 관하여 정부 각 부처, 외국 공관 및 외국사회 단체, 해외 한국공관, 외국 4-H대표조직, 기타 중앙본부와 관계있는 중요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통신은 한국4-H활동주관단체인 한국4-H본부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.

제13조 (4-H회원) 4-H회원은 만7세부터 만39세까지의 청소년과 청년으로서 본인과 그 친권자의 동의(19세 이상은 제외)를 얻어 4-H회에 가입하고, 등록을 함으로써 회원이 된다.

제14조 (4-H지도자) ① 4-H지도자는 성인으로서 인격과 지도력을 갖추고 4-H이념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며,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추거나 4-H본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.

② 지도자는 본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 등록된 4-H지도자가 아니면 4-H회를 조직 및 지

도할 수 없다.

③ 4-H지도자는 그 임무에 따라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.

구 분	자 격	역 할
1. 육성지도자	○ 시군구·도·중앙본부의 임원(시군·도·중앙 4-H본부 이사회)	○ 4-H회원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참여 ○ 시군·도·중앙단위 4-H활동주관단체 운영방향의 설정 ○ 시군·도·중앙 단위 회원 조직의 육성 ○ 4-H조직운영 및 회원육성을 위한 재원 조성 ○ 4-H육성을 위한 시군구·도 지도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
	○ 중앙본부의 4-H교수요원, 연구위원	○ 교육프로그램개발, 사업방향·계획 및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조언
	○ 시군구·도·중앙의 지도위원	○ 4-H육성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조언 및 지역전과
	○ 시군구·도·중앙 4-H본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	○ 시군구·도·중앙 회원조직 운영지원 및 활동에 대한 자문
2. 협조지도자	○ 단위4-H회의 책임지도자, 과제지도자	○ 단위4-H회 조직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시행과 과제활동의 직접 지도
	○ 학교4-H회의 후원회원 및 교장·교감	○ 학교4-H회 조직운영 및 활동의 지원
	○ 지역4-H회 활동의 지원 협력자	○ 지역4-H회 조직운영 및 활동의 지원
3. 전임지도자	○ 시군구·도·중앙 본부에 근무하는 청소년육성전문인력(유급 지도자)	○ 시군구·도·중앙 4-H회원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활동계획의 수립 ○ 승인된 4-H사업계획의 실행과 평가

④ 지도자 교육과정은 별도 정한 규정에 의한다.

제15조 (조직) ① 4-H조직은 4-H회원(청소년)이 참여하는 4-H활동조직과 4-H활동조직을 보호, 육성하는 4-H육성조직으로 구분한다.

② 4-H활동조직은 육성단계에 따라 학생4-H, 대학4-H, 청년4-H로 구분하고, 기본단위인 단위4-H회와 필요에 따라 행정단위별로 조직되는 연합회를 말한다.

③ 4-H육성조직은 중앙에 한국4-H본부(중앙본부)를, 도·특광역시에는 시도4-H본부(지역본부)를 두며, 시도4-H본부 산하에 시, 군, 구 행정구역 단위로 시군구4-H본부를 조직하고 관내 지역의 4-H활동조직을 총괄한다.

④ 중앙본부와 시도 지역본부 및 시군구4-H본부는 유기적 협력관계로서 자주·자립적 운영을 원

칙으로 한다.



[4-H 조직도]

제16조 (조직운영의 원칙) 4-H회의 조직운영과 일체의 4-H활동에 있어 지켜야 할 4-H조직운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.

1. 자주·자립·자율과 자발적 참여의 원칙
2. 민주주의의 원칙
3. 협동의 원칙

제17조 (육성단계별 활동목표와 과제) 4-H활동조직의 육성단계별 활동목표와 과제는 다음 그림과 같다.

육성단계	활동목표	주요학습활동과제
학생 4-H (7~18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-H활동을 통해 배우고 실천하는 청소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-H인성/진로교육 회의생활 도농교류체험 과제(프로젝트)학습 교육행사 국제교류
대학 4-H (19~29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갈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청년리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성/진로교육 리더십훈련 회의생활 및 인간관계 훈련 과제(프로젝트)학습 교육행사 국제교류
청년농업인 4-H (19~39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리더십훈련 회의생활 및 인간관계훈련 지역사회활동 농업전문교육 국제교류
지도자(성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소년과 청년육성에 전문성을 갖추고 4-H육성에 헌신하는 지도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평생교육 본부 조직 참여 후원금 납부 봉사활동 및 행사지원

제18조 (표창 및 감사) 본부는 4-H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, 지도자, 대외인사 및 유공기관에 표창(表彰) 및 감사제도(感謝制度)를 실시한다.

제19조 (수용품 및 표지) ① 4-H수용품 및 표지는 세계의 4-H운동단체에 기준하며 본부가 제정하여 4-H이념과 명예의 상징이 되도록 발전적으로 관리한다.

② 4-H수용품 및 표지는 4-H회원과 지도자에 한하여 사용하며 이는 규정으로 정한다.

③ 4-H수용품 및 표지는 한국4-H활동지원법 제9조에 의거 한국4-H활동주관단체인 4-H본부 이외의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이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형태의 모방제조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.

④ 4-H의 명예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지의 제정 및 수용품의 수급업무를 중앙본부에 국한하여 관장하게 한다.

⑤ 지역본부 및 시군본부는 별도 제정하는 표지 및 수용품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엄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제20조 (등록) ① 4-H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과 지도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.

1. 회원은 ‘학생4-H(초·중·고), 대학4-H, 청년4-H(청년농업인, 여성, 일반)’ 각 부문별로 소정의 신청서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2. 지도자는 매년 소정의 신청서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3. 평생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지도자는 소정의 신청서와 평생회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등록절차, 회원 회비 및 지도자 연차회비, 평생회원 회비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.

제2장 중앙본부(한국4-H본부)

제21조 (기능 및 사업) ① 한국4-H본부는 대한민국 4-H운동을 대표하는 중앙본부로서 정관 및 4-H규범에 의하여 본 운동을 보호 육성한다.

② 중앙본부는 4-H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에 명시된 사업을 한다.

1. 조직·교육·훈련의 지도 관리

2. 각급단위 지역4-H본부의 지도

제22조 (중앙지도위원회회의의 구성) ① 중앙지도위원회회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의장 : 중앙본부 회장

2. 구성

가. 중앙본부 전임지도자

나. 시도 지역본부의 지도위원 대표 1명 및 사무국장

다. 한국4-H지도교사협의회회장

라. 한국4-H국제교류협회장

마. 농촌진흥청 4-H관계관 및 각 시도 4-H관계관

제23조 (중앙지도위원회회의의 개최 및 의안) ① 중앙지도위원회회의는 매년 개최하며, 중앙본부 회장이

이 소집한다.

② 중앙지도위원회의에서 협의한 사항 중 집행을 요하는 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. 단, 회장은 집행을 요하는 사항 중의 일부를 지역본부에 위임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중앙지도위원회의는 다음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협의한다.

1. 4-H회원의 지도 및 교육훈련의 발전에 관한 사항
2. 연구발표 등 기타 4-H운동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
제24조 (사무국) 중앙본부의 정관 및 정관 제5조,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하게 한다.

1. 4-H회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2. 지도자 양성에 관한 사항
3.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도서출판 및 수용품에 관한 사항
5. 등록 및 표창에 관한 사항
6. 홍보에 관한 사항
7. 조사, 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
8. 국제관계 및 섭외에 관한 사항
9. 중앙본부 관리에 관한 사항
10. 중앙본부 회계 및 서무에 관한 사항
11. 각급 지역본부의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
12. 기타 이사회 및 제기구에서 결의된 업무에 관한 사항

제25조 (기구) ① 중앙본부 사무국에는 정관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무총장을 둔다.

② 사무국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기구와 전임지도자(직원)를 둔다.

제26조 (규정 제정) 정관 및 4-H규범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.

제3장 시도 4-H본부

제27조 (설립 등록) ① 도·특광역시 4-H본부(이하 '시·도 지역본부'라 한다)는 중앙본부 이사회회의 승인으로 가입 등록되며 매년 중앙본부에 연차등록을 이행함으로써 유지 존속된다.

② 해외에 조직되는 지역본부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제1항에 준하여 이를 따로 결정한다.

제28조 (명칭 및 소재) ① 시·도 지역본부의 명칭은 '○○4-H본부'라 하며 영문으로는 '○○ Local Council, Korea 4-H Association'으로 한다.

예 : 강원도4-H본부 : Gangwon Local Council, Korea 4-H Association

② 시·도 지역본부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관할지역 내에 둔다.

제29조 (목적 및 사업) ① 시·도 지역본부의 목적은 중앙본부의 정관 제2조를 준용한다.

② 시·도 지역본부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관할 농촌지도기관과 협력하여 당해 시·도 단위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·추진하며, 그 사업은 다음과 같다.

1. 당해 지역본부의 운영

2. 시군구4-H본부의 조직 및 지도
3. 지역본부의 지도자 양성
4. 지역단위 행사의 주관과 개최
5. 당해 지역 4-H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및 섭외활동
6. 중앙본부의 정관·규범 및 제규정 준수 이행

제30조 (정관) 시·도 지역본부의 정관은 <붙임 1>의 모범정관을 준용한다.

제31조 (협력) 시·도 지역본부는 4-H운동 추진에 있어 중앙본부 및 시군구4-H본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.

제32조 (중앙본부 회원 등록) 시·도 지역본부 회원은 중앙본부 정관 제9조에 의거 중앙본부의 회원이 된다. 단, 시·도 지역본부는 매년 중앙본부에 연차등록시 시·도 지역본부 회원명부를 제출해야 한다.

제4장 시군구 4-H본부

제33조 (설립·소속·등록) ① 시군구 4-H본부(이하 ‘시군구 본부’라 한다)는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시·도 지역본부 관할지구 내 시·군·구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본부의 지도에 따라 설립하며, 그 지구 내에 모든 4-H조직을 총괄한다.

② 시군구 4-H본부는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의 승인과 등록을 필함으로써 확정되며, 매년 연차등록을 지역본부 연차등록에 포함시켜 필함으로써 존속되고 지역본부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.

③ 시군구 4-H본부의 승인은 중앙본부가 한다.

④ 연합회의 설립, 등록, 승인, 명칭, 각종 회의에 관하여는 시군구 4-H본부의 관계조항을 준용한다.

제34조 (명칭 및 소재지) ① 시군구 4-H본부는 ‘○○도 ○○4-H본부’라 하며, 외국에 대하여 ‘○○ District, ○○ Local Council, Korea 4-H Association’으로 한다.

② 시군구 4-H본부의 사무소는 당해 관할구역 내에 둔다.

제35조 (목적 및 사업) ① 시군구 4-H본부의 목적은 중앙본부의 정관 제2조를 준용한다.

② 시군구 4-H본부는 목적 달성을 위해 관할 농촌지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조직관리(등록 및 활동실적 관리)
2. 관내 단위4-H회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지도와 지원
3. 관내 4-H지도자 양성
4. 지역단위 행사의 주관과 개최
5. 당해 지역 4-H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및 섭외활동
6. 중앙본부의 정관·규범 및 제규정 준수 이행

제36조 (정관) 시군구 본부의 정관은 <붙임 2>의 모범정관을 준용한다.

제37조 (협력) 시군구 본부는 4-H운동 추진에 있어 중앙본부, 시·도 지역본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.

제38조 (연차등록) 시군구 본부는 매년 도 및 특광역시 4-H본부에 회원명부를 제출하는 연차등록을 하여야 한다.

제5장 4-H회 및 연합회

제39조 (4-H회) 4-H회원에게 교육 및 학습활동을 실시하는 조직단위를 ‘4-H회(영자로는 4-H Club)’라 한다.

제40조 (4-H회의 구성) 4-H회는 4-H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공동체로서 청소년회원과 이들의 활동을 이끌어주는 지도자 및 후원자로 구성된다.

1. 지도자 : 규범 제14조에 의한 4-H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청소년들의 4-H활동을 직접 지도하는 지도자
2. 회원 : 4-H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
3. 후원자 : 회원의 부모, 선배 등 4-H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

제41조 (4-H회의 종류) 4-H회는 육성단계별로 학생4-H, 대학4-H, 청년4-H 등 3종으로 구분하여 육성한다.

1. 학생4-H : 7~18세의 초·중·고등학생 4-H회원
2. 대학4-H : 19~29세 대학4-H회원
3. 청년4-H : 19~39세의 청년농업인, 일반

단, 각 호 부문별 조직에서 현실적 상황에 따라 연령의 제한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.

제42조 (단위4-H회의 기준인수) ① 단위4-H회의 회원 기준인수는 5인 이상 3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군구4-H본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.

② 학교4-H회의 경우 회원수에 따른 4-H지도교사 기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회원 10~30명 : 4-H지도교사 1명
2. 회원 31~60명 : 4-H지도교사 2명
3. 회원 61명 이상 : 4-H지도교사 3명

③ 청년4-H회(영농, 일반 및 대학4-H)의 경우 4-H지도자 기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회원 5~10명 : 4-H지도자 1명 이상
2. 회원 11~20명 : 4-H지도자 2명 이상
3. 회원 21명 이상 : 4-H지도자 3명 이상

제43조 (육성단체) ① 교육, 종교, 사회사업 및 산업기관이나 기타 단체가 4-H육성을 하고자 할 때는 육성단체를 설립하여 단위4-H회를 조직하고 그 필요에 의한 시설과 경비를 부담한다.

② 육성단체는 산하 단위4-H회의 후원회를 구성하고 단위4-H회의 운영 및 학습활동을 지원한다.

③ 육성단체는 단위4-H회의 대표지도자를 선출하여 시군구 4-H본부 운영에 참여케 하고 단위 4-H회를 지도하도록 한다.

제44조 (연합회) ① 단위4-H회 중 학생4-H회, 대학4-H회, 청년4-H회는 부문별로 연합조직인 ‘연합회’를 지역단위별로 조직하여 자율활동을 할 수 있다.

② 연합회는 회원들의 학습활동, 정보교류 및 우의증진 등 자율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

제6장 4-H단체회원

제45조 (4-H지도교사협의회) 학교4-H회의 4-H협조지도자인 4-H지도교사의 지도역량 강화, 정보 교류, 친목도모 등 자율활동을 위하여 지역단위별로 '4-H지도교사협의회'를 둘 수 있다.

제46조 (4-H국제교류협회) 4-H국제교환훈련 수료자들간의 우의증진과 활동정보교류 및 4-H국제 교류협력활동 증진 등 자율활동을 위하여 지역단위별로 '4-H국제교류협회'를 둘 수 있다.

제47조 (4-H단체의 지도) 4-H단체회원은 4-H단체회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대하여 중앙본부의 지도를 받는다.

제7장 4-H활동 프로그램

제48조 (4-H육성원리) 4-H육성원리를 다음과 같이 두어 4-H활동에 집중한다.

1.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발전에 공헌
2. 자연·인간·농업농촌에 대한 사랑의 실천
3. 과제(프로젝트)이수를 통한 자기개발

제49조(6대 주요활동) 4-H회원들이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6대 주요활동을 다음과 같이 두어 4-H 활동에 참여토록 한다.

1. 회의생활
2. 과제활동
3. 수련·문화활동
4. 교육훈련활동
5. 국제교류활동
6. 지역사회 봉사활동

제50조 (교육행사) 중앙, 시도, 시군 등 각급 4-H본부는 매년 또는 격년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행사를 추진한다.

1. 4-H회원 리더십 배양교육
2. 야외수련활동
3. 경진대회(과제발표회)

제8장 회원의 참여

제51조 (회원의 참여) ① 회원의 문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각종 회의에 회원 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발표케 할 수 있다.

② 전 항의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 대표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.

제52조 (학생4-H회 임원회의) 학생4-H 회원들의 자율적 참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, 도 및 시군구 4-H본부는 학생4-H회 임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9장 4-H성인클럽

제53조 (설립 및 운영) ① 각급 조직 단위에 4-H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4-H성인클럽을 조직할 수 있다.

② 성인클럽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. 성인클럽 회원은 4-H지도자로서 시군구4-H본부에 지원·참여하여 4-H활동을 육성 지원한다.
2. 성인클럽 회원은 당해 지역 4-H본부에 등록하되 자율활동조직으로 자주적으로 운영하며 회원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.

③ 성인클럽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범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규정) 이 규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이나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.